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2.
정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4. 7. 31. 황운하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 2024. 8. 1.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 제418회 국회(정기회)

– 제7차 전체회의(2024. 11. 12.)

상정 · 제안설명 · 검토보고 · 대체토론 · 소위원회

○ 제430회 국회(임시회)

–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 12. 15.)

상정 · 축조심사 · 의결(대안반영 폐기)

– 제1차 전체회의(2025. 12. 17.)

상정 · 소위심사보고 · 찬반토론 ·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황운하의원)

현행법은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

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여 수많은 정보주체가 피해를 입었으나,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정보주체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 구제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34조제1항제6호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 정명호)

- ☐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1항).

현 행	개 정 안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①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개인정보처리자의 <u>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u>	4. ----- <u>대응조치</u>
5. (생략)	5. (현행과 같음)
<u><신설></u>	6.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절차에 관한 정보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함)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등을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 유출등 발생 시 통지 사항

조항		내용
제 34조 제1항	제1호	·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제2호	·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제3호	·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제4호	·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제5호	·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 이 중 법 제34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는 유출등의 사실을 알게 된 개인정보처리자가 긴급히 조치한 내용¹⁾과 향후 개인정보처리자 차원에서 이용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계획과 절차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²⁾

□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유출등 사고대응 매뉴얼”에서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방안으로 ‘유출 여부 조회’, ‘민원대응’, ‘현장 혼잡 최소화’, ‘고객불안 해소’ 등과 함께 정보주체의 피해 구제 계획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손해배상제도 등도 함께 안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개인정보처리자에 따라서 개인정보 유출등 통지 시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체적인 피해구제 방안 외에 개인정보 보호법상의 손해배상제도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포함하지 않고 있는

1) 경찰 신고, 일시적 홈페이지 로그인 차단 등

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의 유출 등 사고대응 매뉴얼”(2023.9.개정) 참조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표 2] 유출등 통지 시 손해배상 등 안내 및 미안내 사례

손해배상 등 안내 사례	손해배상 등 미안내 사례																		
<table border="1"> <tr> <td>① 인사말</td><td>안녕하십니까? []입니다.</td></tr> <tr> <td>② 정보주체 성명 적시,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경위 및 사과문</td><td>[]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 간에 발송하는 자료에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음을 [] 인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td></tr> <tr> <td>③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td><td>성명, 생년월일입니다.</td></tr> <tr> <td>④ 공단의 대응조치</td><td>[]은 해당 자료를 [] 및 []기관을 직접 찾아가 회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및 직원교육 확대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td></tr> <tr> <td>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징보주체가 해야 할 사항</td><td>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셔야 합니다.</td></tr> <tr> <td>⑥ 피해 구제절차 안내</td><td>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td></tr> <tr> <td>⑦ 공단의 향후 대응계획 및 사과문</td><td>앞으로 []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등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td></tr> <tr> <td>⑧ 피해 등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td><td>☐ 담당부서 [] ☑ 연락처 []</td></tr> <tr> <td>⑨ 발신명의</td><td>[] 이사장</td></tr> </table>	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② 정보주체 성명 적시,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경위 및 사과문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 간에 발송하는 자료에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음을 [] 인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③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입니다.	④ 공단의 대응조치	[]은 해당 자료를 [] 및 []기관을 직접 찾아가 회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및 직원교육 확대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징보주체가 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셔야 합니다.	⑥ 피해 구제절차 안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⑦ 공단의 향후 대응계획 및 사과문	앞으로 []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등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⑧ 피해 등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 연락처 []	⑨ 발신명의	[] 이사장	[]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및 사과의 말씀] 안녕하세요. []입니다. 먼저 []를 사정해주시는 고객님들께 심려를 끼쳐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립니다. 현재 당사에서 진행한 [] 이벤트 프로모션을 담당하는 대행사의 내부적인 오류로 인해 당첨자 정보 취합 과정 중, 접근 권한이 잘못 설정되어 있어 타인의 응답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링크가 활성화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유출 시점은 당첨 공지 문자를 수신한 []부터 약 1시간 가량, 일부 고객이 제출하신 개인 정보(성명 / 연락처 / 주소 / 우편번호)가 응답을 마친 다른 당첨자분들에게 해당 링크를 클릭 시 열람 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사건을 인지한 직후인 즉각적으로 해당 링크를 비활성화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완전히 차단하였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유출건으로 피해 예상 등 우려점에 대해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 [] 고객센터를 통해 연락주시면 성실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로 심려를 겪으신 고객님들께 사죄의 마음을 담아 [] 상품권을 보내 드리고자 합니다. • 상품권 발송 시점: [] • 상품권 발송 방법: 문자메시지 • [] 고객님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있기에 그 어떤 보상도 위로가 되지 않는 걸 깊이 인지하고 있으나, 직접 한 분 한 분 연락 드리지 못해 전하는 송구스러운 마음을 대신 한 점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 • 피해 등 접수 상담부서: [] • 2차 피해 예방 -이번 사고로 인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의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모를 피해를 막기 위해 휴대폰으로 수신 되는 링크 클릭 시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해당 사고로 인해 심려와 우려끼친 점 깊은 사과와 사죄의 말씀드리며, 앞으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정보 통제 및 시스템 보안을 더욱더 개선하고 강화하여 고객님들의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①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입니다.																		
② 정보주체 성명 적시, 유출 등이 발생한 시점·경위 및 사과문	[] 고객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최우선으로 노력하여 왔으나, [] 간에 발송하는 자료에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있음을 [] 인지하였습니다. 본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③ 유출 등이 된 개인정보 항목	성명, 생년월일입니다.																		
④ 공단의 대응조치	[]은 해당 자료를 [] 및 []기관을 직접 찾아가 회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 및 직원교육 확대를 통해 동일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징보주체가 해야 할 사항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면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하셔서 피해를 최소화 하셔야 합니다.																		
⑥ 피해 구제절차 안내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아래 담당부서에 신고하시면 성실하게 안내와 상담을 해 드리고, 필요한 조사를 거쳐 손실보상이나 손해배상 등의 구제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개인정보 분쟁조정이나 민사 상 손해배상 청구, 감독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 등을 통해 피해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⑦ 공단의 향후 대응계획 및 사과문	앞으로 []은 개인정보보호 조치를 더욱 강화하고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제고하는 등 향후 다시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사랑해 주시는 고객님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거듭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⑧ 피해 등 신고 접수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담당부서 [] ☑ 연락처 []																		
⑨ 발신명의	[] 이사장																		

□ 이에 개정안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을 알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등 피해 구제 절차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입법 방향으로 보임.

□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정보주체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외에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³⁾(이하 “분쟁조정위”라 함)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여 손해배상 등 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조정⁴⁾받을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등의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에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분쟁조정 신청을 할 수 있음을 함께 알리는 방안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으로 구분되는데,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은 개인정보처리자의 법 위반 행위로 정보주체가 손해를 입으면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를

3) 제40조(설치 및 구성) 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4) 제47조(분쟁의 조정)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포함하여 조정안을 작성할 수 있다.

1. 조사 대상 침해행위의 중지 /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같거나 비슷한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가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면 조정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④ 당사자가 조정내용을 수락한 경우(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각 당사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후 조정서 정본을 지체 없이 각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각 당사자의 기명날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배상하도록 하고 있음⁵⁾.

- 다만,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에 정보주체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 과정에서 그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가 있으므로, 법 제39조의2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것만 입증하면 300만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액에 대한 입증 없이 이를 청구할 수 있음.⁶⁾

4. 대체토론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 강준현의원)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함.

6. 찬반토론 요지

5) **제39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

8. 소수의견 요지

없음

9. 부대의견

보호위원회는 과징금을 강화한 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 수입을 실제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에 활용하는 기금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